

2024년도  
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

경 상 북 도 의 회



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

#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

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

## 1. 감사 목적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「경상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경상북도의회에서 도청 행정 주요 시책 전반에 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,
- 시책운영의 불합리한 점은 개선·보완토록 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우수 수범사례는 도내에 홍보하여,
- 지방의회에 부여된 자치입법과 예산심의 등 집행부 견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

## 2. 감사기간 : 2024. 11. 7. ~ 11. 20. (14일간)

## 3. 대상기관 : 12개 기관

- 경상북도(6)
  - 본 청(3) : 문화관광체육국, 기후환경국, 산림자원국
  - 직속기관(1) : 보건환경연구원
  - 사업소(2) : 경북도서관, 산림환경연구원
- 지방공기업(1) :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
- 출자출연(3) : 경북문화재단 (재)경상북도환경연수원 (재)한국국학진흥원
- 위탁·보조(2) : 경상북도체육회,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

## 4. 감사실시 경과

### 가. 감사위원회 편성·운영

- 편성방침 : 문화환경위원회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편성하되,  
필요시 수 개의 반으로 편성 운용 가능
- 위원회명 : 문화환경 행정사무감사위원회
- 위원명단

직 위	성 명	비 고
감사위원장	이 동 업	문화환경위원장
감사부위원장	정 경 민	문화환경부위원장
”	김 대 진	문화환경위원
”	김 용 현	”
”	박 규 탁	”
”	연 규 식	”
”	윤 철 남	”
”	이 철 식	”
”	이 춘 우	”

#### ○ 감사보조요원

- 문화환경전문위원실
 

수석전문위원	정 용 규
전문위원	박 희 범
주 무 관	양 승 욱
주 무 관	김 경 단
주 무 관	정 현 지
- 정책지원담당관
 

문화환경팀장	이 명 숙
주 무 관	권 보 성
주 무 관	우 미 성
주 무 관	최 정 석
주 무 관	김 두 환
- 속기사 2명

## 나. 감사일정

일 시 (장 소)		대상기관	출석요구증인 (관계공무원)	주 요 내 용
11.7 (목)	14:00 (문화위 회의실)	경상북도체육회	회장 사무처장 본부장 부장 단장	○ 업무현황 보고 ○ 질의·답변

## 5. 주요감사 실시내용

-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실적
- 2024년도 예산집행 현황
-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
- 2025년도 예산심의 자료 수집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
-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

## 6. 감사결과 처리의견

### 가. 지적사항 총괄 (6건)

(단위 : 건)

수감기관별	계	시정·처리	건의·촉구	제도개선	비고
소 계	6	0	5	1	
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	6	-	5	1	

### 나. 건의·촉구 요구사항 (5건)

대상기관	내 용	비 고
경상북도 장 애 인 체 육 회	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- 장애인체육회가 미설립 된 시군에 시군 지회를 추가 설립하고 장애인체육관 설립을 위한 도비 확보에 노력해 줄 것	
경상북도 장 애 인 체 육 회	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결원 대책 마련 -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결원 충원을 위해 일반체육지도자 자격소지도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할 것	

대상기관	내 용	비 고
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	성폭력·성희롱 예방과 인권침해 방지 교육 확대 - 권역별 성폭력·성희롱 예방과 인권침해 방지 교육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것	
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	장애인체육회 선수 지원 철저 - 국제대회 참가 시 장애인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	
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	인력 부족 개선 필요 -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인력 부족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	

#### 다. 제도개선 사항 (1건)

대상기관	내 용	비 고
경상북도 장애인체육회	장애인체육대회 시기 조정 - 장애인체육대회 홍보를 위해 장애인체육대회를 비장애인체육대회보다 먼저 개최될 수 있도록 할 것	

### 7.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

- 문화관광체육국을 포함한 소관 사업소 및 출자출연기관 감사 결과,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, 장애인체육회가 미설립 된 시군에 시군 지회를 추가 설립하고 장애인체육관 설립을 위한 도비 확보에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. 또한,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결원 충원을 위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.